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심결사례

1999. 8. 1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대우자동차판매(주)의 차량운송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9811약이1979)</p>	<p>대우자동차판매(주)는 자신의 차량운송계약의 체결시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송계약서상에 운·탁송업체가 자동차제작·판매회사가 자신의 완성차를 운·탁송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상차장 및 인도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내 자동차업계의 거래관행상 자신의 차량을 운·탁송하는 경우 거래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동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우리 상법상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인도된 날의 도착지의 가격,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정액배상주의를 채택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등 운송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칙을 두고 있으므로,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운송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액과 배상기한, 차량의 상품으로서의 하자 유무를 자신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손해배상액과 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한의 이익상실과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하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미리 정한 약관상에 기한의 이익상실과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판단권한을 사업자에게 유보하고 있으며, 또한 최고 등 사전절차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탁송업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로서 사실상 우월적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충청남도계룡출장소의 용지공급협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9904약이0627)</p>	<p>충청남도계룡출장소는 계룡금암지구 용지공급협약서 사용한 용지공급협약서상 정산금에 대한 이자면제조항에서 민법상 유상계약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이자를 부가하여야 함이 기본원칙이고, 동 용지공급협약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미리 받고 준공후 확정측량 결과 계약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계약면적에 비하여 공급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이 본래 약정한 계약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외의 용지대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없는 반면, 계약면적에 비하여 공급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감소된 면적분에 해당하는 대금만큼 과다 선수한 것이므로 잔금을 받은 시점부터 정산할 때까지 이자를 부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이자를 부리하지 않기로 규정하였으며, 연체금리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범위와 정도는 객관적인 근거기준을 토대로 계약상대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객관적인 근거기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당한 이유없이 금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사용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p>에스케이텔레콤(주)의 자금대여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9811약일1889)</p>	<p>에스케이텔레콤(주)는 자신이 고객과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자금대여계약서상에 통상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해지사유를 특약한 경우에도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내용상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에 적합한 중요성을 가져야 함으로 불구하고, 동 계약서상에 계약의 해지사유를 “채무자의 영업활동이 극히 부진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기타 채무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사용하였으며, 재판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p>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원으로 약정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을 사용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p>롯데쇼핑(주)의 대규모소매업점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9903유거0318)</p>	<p>롯데쇼핑(주)는 백화점의 입점 및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입점 또는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동 판촉사원에게는 자기가 소속된 업체에서 판매하는 판촉활동에만 종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대형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98.1.28.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3개 식품 납품업자의 판촉사원 3명을 백화점직영 주류 및 음료 판매장에서 가격표 확인, 포장, 현금출납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점 및 납품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99.1.8.부터 1.24.까지의 기간 중 실시한 할인행사 기간 중 엘지세탁기 및 엘지밥솥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 할인행사기간 전·후에 판매가격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9.1.15.자 전단광고를 통해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표시·광고하였으며, 동 할인행사 기간 중인 '99.1.13. 중앙일보에 LG캠코더 등 3개 제품을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한 이후, 실제 판매가격에는 변동이 없는 등 제품들에 대하여 또다시 '99.1.15.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99.1.15.부터 1.17.까지 3일간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표시·광고하는 등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는 제품을 마치 특정기간 동안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위반</p>	<p>◎ 대규모소매업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469백만원</p>
<p>(주)경방유통의 대규모소매업점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9903유거0325)</p>	<p>(주)경방유통은 '98.12.7.부터 12.13.까지의 기간 중 당일 하루동안 한 여성류 브랜드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 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사은품 비용의 분담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인 서면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1천원의 총비용 중 13,755천원을 지폐선 등 79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으며, '98.1.15.부터 1.27.까지의 기간 중 "새해</p>	<p>◎ 대규모소매업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첫 유명브랜드 세일"행사를 실시하면서 동 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갈비·정육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자신에게 직매입거래형태로 당해 갈비·정육세트를 납품하는 (주)동해종합식품에게 동 사은품 비용 6,299천원을 전액 부담시켜 이를 상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자신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의 거래를 거절하기 어려운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사은품 비용 등을 납품업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경품의 경우 경품부상품의 거래가액이 30,000원 이상일 경우의 경품류 제공가액한도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12.7.부터 12.13.까지의 기간 및 '98.12.18.부터 12.31.까지의 기간 중 두차례에 걸쳐 소비자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여성 의류 등 백화점 상품을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23,375원 내지 30,250원 상당의 게르마늄 냄비 등 3개 품목 중 고객이 선택하는 1개 품목을, 4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45,000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이드라스타 6종세트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경품류의 제공가액인 20,000원 및 40,000원을 초과하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p>	<p>양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신세계백화점의 대규모소매업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9903유거0320)</p>	<p>(주)신세계백화점은 '98.10.9.부터 10.25.까지 17일간의 기간 중 자신의 백화점 본점, 영등포점, 미아점, 천호점에서 상품의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이 응모 가능하며,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자에게는 냉장고, 김치독 등을 지급하는 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13,600천원 상당의 동 경품행사 비용을 각 점의 여성정장매장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 일반대중을 상대로 백화점 자체의 이미지 제고 및 자신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사로 입점·납품업체의 상품매출과는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경품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동 경품비용을 전액 입점·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선택이나 거래조건을 설정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점·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경품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대규모소매업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315백만원</p>

1999. 8. 2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해태상사(주) 및 (주)해태타이거즈의 채무보증제한규정 위반행위 (9904기업0536)	해태상사(주) 및 (주)해태타이거즈는 구법 제5235호 및 구법 제5528호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및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해태』 소속 회사들로서 동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 총액이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해태제과(주)는 '98.4.1.현재 채무보증한도액인 52,243백만원보다 19,226백만원을 초과한 71,469백만원을, (주)해태타이거즈는 '97.10.15. 현재 채무보증한도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26,000백만원을 채무보증하는 등 채무보증제한규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구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위반	<p>◎ 채무보증제한규정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p>◎ 과징금 납부(단위: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태상사(주) : 105,600 · (주)해태타이거즈 : 50,000
현성기공의 부당한 광고행위 (9904부사0621)	현성기공(주)는 '99년 3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안마·안락의자에 대해 광고전단지를 통한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동 의자의 부품 중 하나인 원단부품만 Q마크 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안마·안락의자 제품 자체에 대해 Q마크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등 사실과는 다르게 자신의 안마·안락의자가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판매처(대리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1999. 8. 3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사)한국유선방송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 (9902공동0172)	(사)한국유선방송협회는 '98년 11월경 당시 추진되던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정에 앞서 종합유선방송법만 우선 개정될 경우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불리함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분야에서 사실상 대기업의 독식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98.12.5. 회장·부회장 등 회장단과 이사·감사·지부장이 참석하는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여 12.8. 오전 8시부터 방송송출을 중단하기로 의결하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 동 의결에 따라 860여 전체사업자 중 359개 사업자가 방송송출 중단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방송송출 중단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	◎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전선제조 1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9903단체0298) (대원전선(주)(舊 (주)엔케이전선), 극동전선공업(주), 대성전선공업(주), 대영전선(주), 고려산업개발(주)(舊 (주)신대한), (주)대용전선, (주)천일통신, 세광전선(주), 고려전선(주), 대봉전선(주), (주)진로산업(舊 (주)진로인더스트리즈), 한국전선(주), (주)경안전선, 세화전선(주)), 대일전선(주))</p>	<p>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대원전선(주)(舊 (주)엔케이전선) 등 전선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15개 전선제조업체는 '98.6.1.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각 업체의 실무자급인 부장,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리일(空reel, 전선을 감는 목드럼) 반납문제를 논의하면서, 경기 위축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는 등 전선업계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여 '98.7.21.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주하는 전선케이블 PVC(4종) 등 총 4건의 물품구매년간단가계약 입찰시에 서로 과당경쟁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논의를 하고, '98.6.12. 동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도 동 회의 참가 실무자들이 동 입찰전에 대해 낙찰자를 미리 선정하여 물량을 나눠갖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서명하는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통신케이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업체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통신케이블 구매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샤크존 및 고려개발산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903기획0287)</p>	<p>(주)샤크존 및 고려개발산업(주)는 대전광역시 소재 「샤크존빌딩」의 분양과 관련하여 '98년 9월중에 광고전단을 이용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시공사인 고려산업개발(주)만이 대규모기업집단 「현대」그룹의 계열사이고 동 건축물의 분양사업자인 (주)샤크존은 동 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광고전단에 「패션 시티 現代 샤크존 분양!!」, 「성공비즈니스를 위해 現代의 기술력과 손잡았습니다」, 「現代 샤크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며, '98년 10월부터 '99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샤크존 빌딩 공사현장에 위치한 가로 14m, 세로 1.7m의 분양사무소에 「現代」를 강조한 간판을 표기하여 광고하는 등 (주)샤크존이 대규모기업집단인 「현대」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 광고상에 시공사가 속한 국내 유명 대규모기업집단 「현대」의 상징마크 등을 분양대상 건축물의 명칭에 포함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서 하여금 마치 시공사인 고려개발산업(주)가 분양에 관여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 크기로, 고려산업개발(주)는 단독명의로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국엡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903기획0377)</p>	<p>한국엡손(주)는 자신이 판매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대해 '99년 2월부터 동 제품을 판매하는 각 매장에 1,500개의 광고 판넬을 게시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가격 및 출력속도 등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동급의 제품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경쟁사의 제품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제품과 출력속도를 비교하였으며,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출력용지의 종류, 표현대상 그림의 종류 등 인쇄품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출력환경에 따라 인쇄품질의 상대적 우수성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해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의 제품 성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나 경쟁사 제품의 성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환경하에서 출력된 출력물을 동일지면에 게재하여 비교함으로써 마치 자기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 출력속도와 인쇄품질이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한국휴렛팩커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906소기0850)</p>	<p>한국휴렛팩커드(주)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잉크젯 프린터와 관련하여 '98년 9월부터 자신의 제품판매 매장에서 광고전단을 이용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잉크젯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수성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갖는 본질적 속성인 문제가 출력품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고 프린터 제조사들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사 고유의 잉크 분사방식, 잉크 및 출력용지제조기술 등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사의 제품은 각각 출력품질을 가장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출력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력에 소요되는 용지 및 잉크의 종류나 표현대상 이미지의 형태나 복잡성의 정도 등 비교환경을 달리 할 경우 인쇄품질의 상대적 우수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품 성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나 경쟁사 제품의 성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환경하에서 출력된 출력물을 동일지면에 게재하여 비교함으로써 마치 자신의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 인쇄품질이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롯데캐논(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906소기0851)</p>	<p>롯데캐논(주)는 '98년 9월부터 '99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프린터에 대하여 전단 110,000매를 통한 광고를 함에 있어 자신의 제품 기능</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초절약모드를 적용하여 출력할 경우 인쇄품질이 매우 낮아 테스트출력 등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서 외에 각종 주요 문서나 보고서 등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기존에는 4방울의 잉크가 소모되었다면 초절약모드는 1방울의 잉크만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 4배 많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마치 초절약모드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프린터 제품과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의 인쇄품질로 4배 많은 양의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건양1.2시력강화교실의 부당한 광고행위 (9905광고0718)</p>	<p>건양1.2시력강화교실은 자신의 시력훈련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98년 3월과 9월에 조선일보 등 2개 일간지에 광고를 하면서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은 별도의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시력강화운동협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호 위에 “문교부 허가 제88호”로 설립되어 “문체부 사체 제 2591-4401호”로 정관변경을 받은 동 협회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상호에 대해서도 실제 상호와는 다른 “건양1.2시력교실 사업본부”라고 표기하는 등 자신의 상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단체이거나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본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씨티은행 서울지점의 부당한 광고행위 (9906광고0910)</p>	<p>씨티은행 서울지점은 자신이 발생하는 비카드 사용 한도액과 관련하여 '98년 12월부터 '99년 4월 사이에 6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배포한 씨티은행 비카드 이용 안내전단을 통해 당초 안내전단을 보고 가입하는 골드카드 가입회원들에게는 일반카드의 가입회비보다 1만원 비싼 2만원의 가입 회비를 징구하면서 실제로 카드 구매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구매한도액 조정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카드 구매한도액인 200~300만원을 적용하는 등 골드카드 회원들에게 일반카드 회원들의 구매한도액을 적용하면서도 골드카드 구매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